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
-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5
 -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 09.

나.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 09.

라. 상정일자 :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방연물품의 비치 등에 대해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1. 02. ~ 01. 0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경상남도 화재 사망자 22명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나와 있음.

- 이처럼 각종 화재사고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하며 유독가스에 노출될 경우 대피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식을 잃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현장에서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 착용은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생명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2조 방연물품의 정의에서 방연물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화재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남녀노소 공용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등 제품 구입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소방청 통계에 2023년 경상남도 화재 건수 199건 중 아파트 32건, 단독주택 33건으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와 있음, 이 조례 시행 시에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 09.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 09.

라. 상정일자 :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수자 의원)

-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사항(안 제4조)

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행복농촌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3. 12. 27.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과 인구유입을 촉진 하기 위한 것으로,
- 그동안 전원주택 단지 등에서 기반시설 확충 미흡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의 목적 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지역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한 정책과 계획 및 사업이 관련 분야간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 05.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1. 09.
- 다. 상정일자 :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2024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치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업비 : 93,470천원(국 46,735 도 32,714 군 14,021)
- 라. 사업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사. 위탁기간 : 2024.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4. 참고사항

가.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3. 4. ~ 12.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인 원 : 1회 20명 이내
-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 4,615명(숲해설 2,055명, 산림치유 2,560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

(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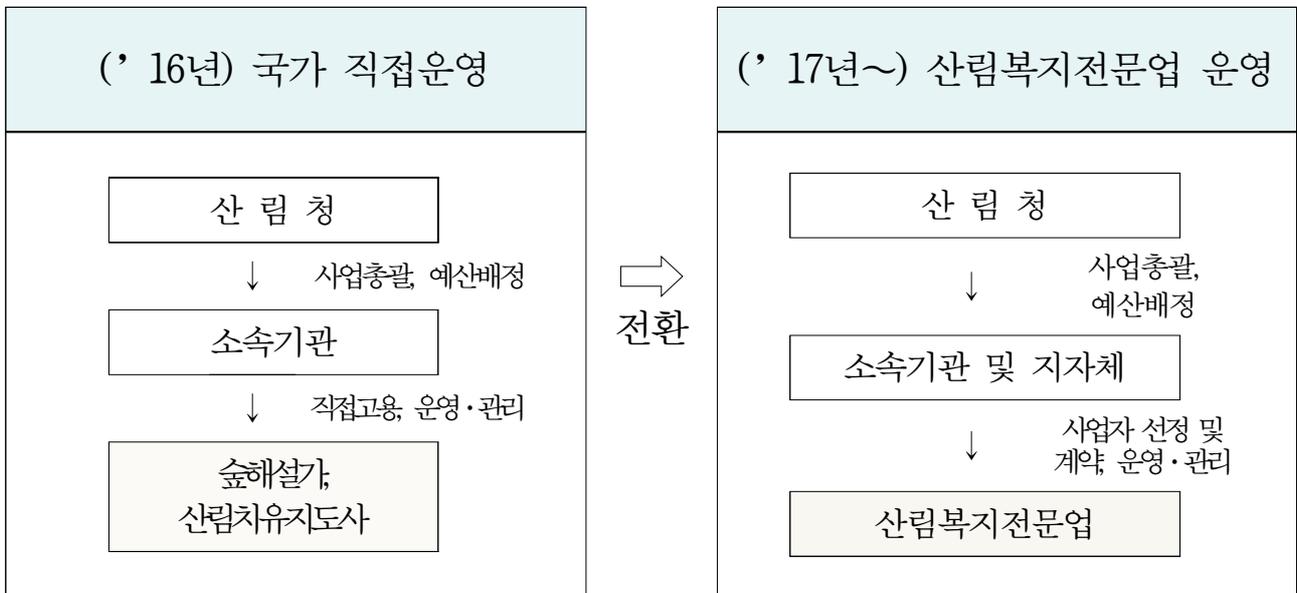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운영

○ 세외수입 : 금19,433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문성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